



대기배출시설 적산전력계 부착시기 알림

적산전력계 부착 대상시설 및 방법

1. 적산전력계 부착대상시설

배출시설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방지시설

※ 참고 :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12. 29, 1997. 8. 28〉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5. 12. 29, 1997. 8. 28, 2005. 12. 29〉

1.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 또는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배출허용기준 준수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부착 제외 대상〉

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한 배출구와

연결된 방지시설

나. 방지시설과 배출시설이 동일한 전원설비를 사용하는 중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지시설

다. 원료나 제품을 회수하는 기능을 하여 항상 가동하여야 하는 방지시설

2. 적산전력계 부착방법

방지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 수 있도록 부착하되, 방지시설외의 시설에서 사용한 전력은 전산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전력사용량이 방지시설 전력사용량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산할 수 있다.)

※ 적산전력계 부착에 대한 경과조치 (2005. 4. 15) 기존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운영중인 배출시설로서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적산전력계 부착대상 방지시설이 설치된 배출시설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벌칙〉

대기환경보전법제5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에 벌금